

건의자료

2014년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2014. 11



차 례

I 거래활성화

1. 코넥스(KONEX)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
2.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하향
3. 주식워런트증권(ELW) LP 호가제출 규제 완화
4. 대체거래소(ATS) 1일 거래한도 상향

II 영업환경 개선

5. 신용생명보험, 신용손해보험의 대출창구 취급 허용
6.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 완화 및 역외 연락사무소 설치 허용
7. 투자중개업자의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8. 방카슈랑스 판매 25%를 완화
9. 접대비 3만원 규제 완화
10.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 완화
11.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아웃소싱 제한 개선

III 자금운영 여건 개선

12.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차입 규제 완화
13. 외화 자금차입 신고기준 금액 상향
14. 은행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단축
15.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폐지

IV 이중규제 해소 및 기타

16. 장외파생상품 관련 은행 이중규제 개선
17. 투자자예탁금의 예금보험료 면제
18.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
19. 대형 보험대리점 책임 부여
20. 보험사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1. 코넥스(KONEX)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

□ 현황

- 일반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함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엔젤투자자는 기본예탁금 면제)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 일평균 거래량(42,156), 일평균 거래대금(317백만원)이 저조해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3.7월~'14.5월)
* '14.8월 일평균 거래량 : 39,000

□ 문제점

- 위험도가 높은 시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코넥스 시장 참여자에 대한 기본 예탁금이 높아 거래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하루 평균 거래대금인 3~4억원 수준인데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3억원 이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음
- 거래가 되지 않아 사실상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추진을 재검토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실정임
- 투자경력, 전문지식, 자격증 등에 있어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예탁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 개선과제

- 일반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해 시장 활성화 요청
 - (현행) 3억원 → (개선) 1억원
- 투자경력, 투자 관련 자격증 등 정성적 진입기준을 별도 신설하여 보완한다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손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

2.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하향

□ 현황

- 정부는 KOSPI200 옵션의 계약단위인 옵션승수를 기존 10만원에서 선물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인상(‘12.6월)
 -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조
- 개인투자자의 지나친 투기 억제, 파생상품시장의 통일성 유지 목적

□ 문제점

- KOSPI200 옵션은 단일 상품기준으로 ‘00년부터 거래량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거래승수 인상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13년에는 처음으로 2위를 기록함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
 - 2위(‘11년) → 3위(‘12년) → 8위(‘13년)
 - 세계순위(‘13년) : 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 독일, 영국, 러시아, 한국, 일본 順
- 파생상품시장은 헤지와 차익거래 등을 통해 현물시장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생시장의 거래 감소는 현물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옵션승수 인상으로 거래량 급감,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수익 감소, 시장 축소의 부작용이 커 ‘투기 잡으려다 투자자를 잃어버린 꼴’이 되었음

□ 개선과제

- 옵션 거래승수를 예전 수준인 10만원으로 하향
 - 거래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 필요
 - 개인 옵션 투자자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로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3. 주식워런트증권(ELW¹⁾) LP 호가제출 규제 완화

□ 현황

- ELW 시장은 소액 투자자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옵션투자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개설되었음('05.12월)
- 정부는 과도한 호가제출로 인한 가격왜곡과 비정상적인 시장파열 가능성을 방지하고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LP(유동성 공급자)의 호가제출을 제한('12년)
- 시장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간격)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8~15% 수준으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동 시행세칙 제31조의 8

□ 문제점

- 시장 스프레드가 촘촘해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현재 LP는 호가 스프레드가 8% 이상 벌어져야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가의 빈도가 줄고 거래대금도 급격히 감소되었음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으며 ELW 시장은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음
 - 일평균 거래대금 : 1조6374억원('10년) → 1169억원('13년)
 - ELW 상장 종목수 : 9,063개('10년) → 4,115개('13년)
 - 유동성공급자(LP) 수 : 28개사('10년) → 15개('13년)

□ 개선과제

- LP의 호가를 제한하는 규제 완화
 - 15% 초과 호가제출 범위 축소, 호가 스프레드 8% 이격 조건 폐지
 - 거래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해 ELW 시장을 정상화 할 필요

1)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으로 예정된 시점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4. 대체거래소(ATS)²⁾ 1일 거래한도 상향

□ 현황

-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키고, 거래 체결시간 및 거래수수료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 졌음(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13.8월)
 - 정부는 ATS가 중요한 자본시장 인프라이기 때문에 거래한도에 대해서도 규제
 - 하루 평균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의 5% 이하, 특정 종목 거래의 10% 이하
 - 시장점유율이 5%가 넘을 경우에는 정식거래소로 요건을 갖춰 인가 받아야 함
 - 신규 ATS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재 한국거래소 보다 거래수수료를 낮춰야 하고 거래 체결시간을 낮추기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 투자에도 나서야 함

□ 문제점

- 거래규모가 5%로 제한돼 있고 각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ATS 지분율도 15%에 불과해 사실상 기대수익이 미미함. 따라서 증권사가 ATS 운용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ATS 설립허용도 무색해졌음
-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ATS를 도입한 정책적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과제

- ATS의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요청
 - 시장전체 거래량의 20%, 개별종목 거래량의 30% 수준

2)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 일부를 맡는 대체거래 시스템
- IPO, 시장감시 등 자율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오직 매매체결에만 특화

5. 신용생명보험, 신용손해보험의 대출창구 취급 허용

□ 현황

-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
 -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신용생명보험³⁾, 신용손해보험 상품도 보험판매를 위한 전담창구에서 보험판매전문 직원 등에 의한 판매만 허용되고 있음

□ 문제점

- 신용보험은 사망, 상해 등 보험사고 발생시 미상환 대출금 잔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대출거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그러나 보험상품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모집업무와 대출업무의 겸업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과제

- 대출창구에서 신용보험 판매 허용
 - 신용보험에 한해 보험모집업무와 대출업무의 겸업 허용

3)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 장해, 암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보험사가 대출고객을 대신해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

6.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50%) 완화 및 역외지역 연락사무소 설치 허용

□ 현황

-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없음
 -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 또한 서울,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에서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 문제점

- 영업구역 외에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내에서만 여신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제한이 많음
- 또한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간판 등을 달지 않는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구역 외의 여신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개선과제

-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에서는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 최소유지비율을 40%로 완화 요청
-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7. 투자중개업자의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 현황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투자중개업⁴⁾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음
 - * 외국환거래규정 제2-15조
- 투자중개업자가 대외지급수단⁵⁾ 매매 및 매매의 중개와 관련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고객 투자자금의 환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
 - * 외국환거래규정 제2-15조 제3호

□ 문제점

- 투자중개업자는 대외지급수단 매매의 중개 거래시마다 투자자금인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됨
- 또한 수시로 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외환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 개선과제

-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업무의 범위 확대
 - 외국환거래규정 제2-15조 제3호의 '고객 투자자금의 환전을 위한' 문구 삭제

4)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5)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의미

-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환, 신용장 등

8. 방카슈랑스 판매 25%를 완화

□ 현황

-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관)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보사 또는 1개 손보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 신규 상품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6항
- 현재 보험사들은 국내 시중은행과 방카슈랑스 판매제휴를 맺고 있으며,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25%가 넘으면 상품판매를 중지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팔아 해당 상품의 비중을 줄여야 함

□ 문제점

- 방카슈랑스 판매 25%률은 방카시장 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25% 초과 판매 금지규정 준수를 위해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가 중단되는 등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음

□ 개선과제

- 판매액 비중 확대 요청 (現 25% → 35%)

9. 접대비 3만원 규제 완화

□ 현황

-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편의 등(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
 -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18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 4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제출시 거래 상대방 성명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도록 하고, 개인 고객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은품과 기념품은 예외 항목으로 인정하는 등 일부 완화했음
- 그러나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금융투자회사는 여전히 접대비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저녁만찬의 경우, 두 사람이 식사하면 3만원은 쉽게 초과할 수 있음. 따라서 외부 고객과 만날 때에는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음
- 동일한 거래에 대해 기준 금액 이하로 분할 결제할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편법을 야기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미약함

□ 개선과제

-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요청

10.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 완화

□ 현황

-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 카드모집인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발급 건수에 따라 수당을 제공받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 문제점

- 카드 연회비가 보통 1~2만원대임을 감안하면 1~2천원 이내의 경품만 제공해야 함
-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1천원대의 경품을 찾기도, 이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움

□ 개선과제

-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 완화
 -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한선을 높여줄 것 요청

11.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아웃소싱 제한 개선

□ 현황

-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변호사법 제109조
- 현재 보험사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액이 정해져 별도의 합의 업무가 필요없는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대해서 외부 손해사정법인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아웃소싱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액에 대한 합의 또는 법원판결을 거쳐야 하는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해당 보험사만이 합의 또는 화해를 할 수 있음
- 보험사가 아닌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 대인보상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문제점

- 보험사는 대인 손해사정업무를 사내 별도 조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관리비 등 사업비 절감이 어려우며, 이는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과제

- 대인 손해사정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보험업법상 특례조항 도입)

12.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차입 규제 완화

□ 현황

-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음(11.7월)
 - 원칙적으로 '원화용도'의 신규 외화차입 제한, 기존 차입금 만기 상환 유도
-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여전사별로 자금조달 구조, 기존 차입규모 등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해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였음
 - 총 차입금의 10% 이내, 자기자본의 50% 이내 등
 -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외환총괄-00034, 11.7.7)

□ 문제점

- 신설 여전사는 기존 외화차입이 없고 국내 위주로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어 기존 여전사에 비해 차입구조의 불균형이 심함
- 따라서 차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는데 기존 他 여전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총외채 중 단기차입비중 감소, 외화 완충자산 증가 등 외화 건전성 지표가 지속 개선되어 규제의 효용성이 미미함

□ 개선과제

- 외화차입 규제 완화 요청
 - 국내시장 의존도 완화, 차입선 다변화로 자금조달 구조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외신인도 제고 가능

13. 외화 자금차입 신고기준 금액 상향

□ 현황

- 현재 지자체,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차입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외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외화 자금차입 신고기준이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 미화 5천만불임
 - *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 문제점

- 차입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도 3천만불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대상이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여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역금융 지원이 절실한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외환관리 규정에 신고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차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허가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임

□ 개선과제

- 신고기준을 완화해 기업 요구에 탄력적 적용 요청

14. 은행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단축

□ 현황

-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예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채는 사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적용
 - * 상법 제64조, 제487조
-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채 관련서류(현물채권, 신규신청서 등)를 10년간 별도 보관하고 있음

□ 문제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 은행채와 그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남
 -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
- 은행은 채권을 상환 받은 후에도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은행채에 대해서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가 역차별 받는 것임

□ 개선과제

- 은행채 상환청구권의 소멸기간 단축 요청
 - 원금 5년, 이자 3년

15.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

□ 현황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 *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 지방세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 * 지방세기본법 제74조 제1항

□ 문제점

- 지자체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 제도가 기업의 현금 유동성 향상, 도난 위험성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기업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세 카드 수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1천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개선과제

- 신용에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
 - 기업의 납세편익 도모

16. 장외파생상품 관련 은행 이중규제 개선

□ 현황

- 자본시장법은 거래상대방이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보호제도를 두고 있고, 은행법에서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가이드라인’에서 기업투자자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은행법에서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그 상대방을 기업상대방과 기관상대방으로 나누어 규정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2> 3. (용어의 정리) 라. ‘기업투자자’는 이하
 -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3. (용어의 정리)

□ 문제점

-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겸영업무를 할 경우에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음
- 따라서 파생상품을 본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사에 비해 영업환경이 불리하며, 은행의 파생상품업 발전에도 장애요소로 작용

□ 개선과제

- 은행법상 투자자구분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구분을 통일시켜 줄 것 요청

17. 투자자예탁금의 예금보험료 면제

□ 현황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일시 보관중인 예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 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계·압류·담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자사운용도 국고채 등 비위험 자산만 가능함
-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별도의 보험금도 납부해야 함
 - * 예금 등 연평균잔액의 0.15% (30%의 비율범위에서 그 비율 인하 가능)
 -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 문제점

- 투자자예탁금은 전액이 강제로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전액 투자보호가 되고 있으나 예보의 부보대상(예금보호 대상 예금)으로 편입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함

□ 개선과제

-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면제 요청

18.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

□ 현황

- 현행법에서는 펀드 수시공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등 3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
 - *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 문제점

- 전자우편은 다수의 고객들이 스팸메일로 간주하고 있고 본점 등에 책자를 비 치해 게시하는 경우, 실제 자료를 찾아보는 고객이 거의 없어 공시 효과가 낮은 것이 현실임
- 법령상 게시 기간 기준도 없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해 실무상 업무 혼선 초래

□ 개선과제

-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기본으로 하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자우편 수신을 통하여 공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 지정 요청

19. 대형 보험대리점 책임 부여

□ 현황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적으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변호사법 제102조
-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문제점

- 배상 부담능력이 충분한 보험 대리점의 경우에도 부실판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보험사기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개선과제

- 부실판매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여하도록 요청

20. 보험사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 현황

-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고 있음
 - * 보험업 제2조
- 또한 보험회사가 자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 보험업 제109조
- 우리나라의 자회사 규제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임
 - 미국 :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
 - 일본 :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수량 또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 문제점

- 금융이 글로벌화, 대형화 되는 환경속에서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자회사 설립 또는 자본 제휴를 통해 신규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 자회사 관련 규제가 지자치게 보수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국내 상법 등에서 자회사 기준을 50%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자회사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함

□ 개선과제

-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자회사의 범위를 해당 회사 주식 50% 초과 소유한 경우로 변경 요청